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4. 6. 19.(수)

외부감사법 위반 등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

-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(6.19.) 조치 의결

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9일 제12차 회의에서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붙임)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	책임자	과 장	최치연 (02-2100-2680)
			팀 장	류성재 (02-2100-2690)
		담당자	주무관	고광순 (02-2100-2692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	책임자	실 장	권영준 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	이성호 (02-3145-7864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(붙임)

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4.6.19. 의결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우리회계법인	**【소속 공인회계사】** ① 감사업무제한 조치위반 - 공인회계사 OOO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'주권상장회사(코스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본 조치를 위반함 - 공인회계사 ☆☆☆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'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받았음에도 주권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본 조치를 위반함 ② 감사업무 관리소홀 - 담당이사 □□□은 '주권상장회사(코스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OOO을 본인이 담당하는 지정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 - 담당이사 OOO은 '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' 조치를 받은 공인회계사 ☆☆☆을 본인이 담당하는 주권상장회사 감사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감사업무 관리를 소홀히 함	**공인회계사 1인 :** - ㈜OO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및 ㈜●●●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2시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직무정지건의 6월 - ㈜●●●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-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,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16시간 **공인회계사 1인 :** - ㈜OO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회사(코스닥 상장 제외)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)